제46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2020. 11. 27.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 11. 27. (금) 13:30 ~ 18: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1907호)

○ 출석위원(14명)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주재)

- 민간위원 : 김준기・문소영・박소라・윤여송・이세영・이철수・이현주・정은미・정지연・최병환 위원

* 불참(6) : 김윤정・박순애・안소은・이원우・이정희・이지혜 위원

- 정부위원 :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법제처

* 불참(3) :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Ⅱ. 상정안건

의안번호	상정기관	의 안 명	구 분
2020-718	국조실	2020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보고 안건
2020-719	국조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6차)	보고 안건
2020-720	국조실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1~’23)	의결 안건
2020-676	법무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의결 안건
2020-663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 공정위 회피	의결 안건

Ⅲ. 심의 결과

1. (보고)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국조실, 2020-718)

□ **보고내용** (요약)

○ 국민 참여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강화

* △규제신문고 운영근거 법제화 △국민 건의창구 규제신문고로 통합·연계 △규제신문고 전용·독립 홈페이지 개설

○ 규제신문고 실적

* △(전체실적)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5,972건 접수·처리 △(금번실적) '20.2월~'20.10월까지 총 1,380건 접수·처리

○ 규제혁신 주요사례

* △자가용 캠핑카대상 차고지 확보의무 규제 완화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류규제 일괄적용 합리화 △학교 신·증축시 타당성조사·투자심사 중복절차 개선 등 주요 사례 37건

○ 향후 추진계획

* △정책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개편 △현장소통 및 홍보활동 강화 △개선과제 이행점검 실시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접수

□ **기타의견**

○ 개선과제에 대한 적극 홍보

2. (보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국조실, 2020-719)

□ **보고내용** (요약)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혁파

○ '**先허용-後규제**' **체계** 토대로 규제샌드박스, 입법방식 유연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현장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
→ 이에 대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결과보고

* 그간 **5차례**에 걸쳐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총 299건 검토, **275건 해소 /** 신산업 **현장**의 **규제 발굴**, **민간전문가·관계부처·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책 모색

○ **(주요내용)** 금번에는 6번째로 **수소충전소, 자율주행차, 비대면 교육, 의약품, 화장품** 분야 애로를 집중 발굴·개선

○ **(추진실적)** 6월부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총 37건 발굴****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을 통해 **총 31건 애로 해소**

* 과제 발굴, 분과위 검토 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중심으로 추진
** 검토결과 : △수용(20건) △대안 마련(11건) △차기 재논의(6건)

○ **(과제특징)** 신산업 규제혁신의 **연속성 유지**, 이전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발전**

- **(신재생에너지)**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 태양광 보급 확대 등 5건
- **(무인이동체)** 자율주행차에 대한 선제적 제도 개선 등 3건
- **(바이오헬스)** 의약품, 맞춤형 화장품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1건
- **(ICT 융합)** 비대면 교육 활성화, 국가R&D 성과 활용 개선 등 12건

○ **(향후계획)** **△후속조치*, △현장소통**, △포스트코로나 대비, 규제 집중*****

* **31건**의 과제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 및 행정조치 추진**
** 논의과정에 참여한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상세내용 설명·공유**
*** 신산업 현장의 **시급**한 **규제개선 수요**에 **집중**,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규제개선 병행 추진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접수

□ **기타의견** : 사이버대학에 대한 평가 마련 필요, 재직 소방공무원의 드론 활용 역량 강화 지원 필요

3. (심의)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국조실, 2020-720)

□ **보고내용** (요약)

○ **(추진배경)**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7월)에 따라 3년 단위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 → **선도적·체계적 규제혁신 추진**

○ **(기본방향)**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동력 창출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

① **(도전적 규제정비)** 先허용-後규제, **네거티브화**를 실천

- **규제 샌드박스 확대**(분야·특례기간 확대, 지원조직 정비, 특구제도 개편, 규제개선 집중추진), **포괄적 네거티브 정착** 추진

② **(상생형 규제정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

- **갈등 조정체계 강화**(총리/국조실장 주재 회의, 한걸음 모델/실증특례 활용), **현장소통 채널 활용**(총리 주재 현장대화, 신산업규제혁신위 등)

③ **(선제적 규제정비)** **미래 신기술 발전**을 사전에 준비

- **규제혁신 로드맵 확대**(AI·바이오헬스·자율운항선박), **주기적 재설계** 착수

○ **(추진과제)** **5대 분야 19개 신산업 집중정비** 추진(67개 과제)

1 **DNA 산업**	**①빅데이터 ②인공지능 ③지능형 로봇 ④핀테크**
2 **비대면 산업**	**①가상·증강현실 ②원격교육 ③디지털콘텐츠**
3 **기반산업 스마트화**	**①스마트도시 ②스마트그린산단 ③SOC 스마트화 ④자율주행차 ⑤드론 ⑥공유경제**
4 **그린 산업**	**①신재생에너지 ②친환경차 ③녹색 인프라 ④친환경 농·어업**
5 **바이오·의료산업**	**①디지털 헬스케어 ②유전자 검사·치료 ③新의약품·의료기기**

○ **(향후 계획)** 부처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추진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

□ **기타의견**

○ 규제정비시 안전·생활·환경·인권 등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

○ 신산업 발전 속도를 감안, 패스트 트랙 마련 등 신속한 정비 필요

○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실증특례 검증 등에 전문가를 활용, 사회적 영향 검토 필요

○ 인력확충, 투자 등 인프라 부분도 추가할 필요

4. (심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무부, 2020-676)

□ 개 요

소관 부처	법무부
규제 강화 내용	채권추심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기간 등 채무 관련 정보 통지의무 부과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수받아 변제요구하는 행위 금지
위원회 결정 내용	원안동의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반대측)

○ (○○○협회) 본 개정안 제8조의5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권을 양수하여 변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신중검토를 요청함. 이미 금감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이 금지되어 있으며, 입법을 통한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을 제한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함. 또한, 협회는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를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이미 금지하고 있음.

○ (○○○위원) 채무 관련 정보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지?

○ (○○○협회) 정보통지 의무에 대해서도 이미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정이 되고 있음. 본 개정안은 기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음.

채권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기 마련인데, 양수 과정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해석에 따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음.

○ (○○○위원) 개정안은 명확하게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 (○○○협회) 규정은 그렇지만 시장의 상황에서 채권을 파는 사람은 팔 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채권을 산 사람은 잔금을 치루고 채권을 구매했을 때는 이미 기간이 경과 하였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즉, 소멸시효 기간의 완성과 달리 경과라는 표현은 자칫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 (○○○위원) 금감원 행정지도와 본 개정안에 완성과 경과라는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본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8조의5 제2항에서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에 규제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음. 전문성을 지닌 업체들이라면 이를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취지인지?

○ (○○○협회)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다른 의미의 부분을 지적한 것.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가 아닌, 채권자와 채권추심업자 간의 해석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임.

○ (○○○위원) 해당 부분은 채권 매각 계약체결 단계에서 반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완성된 채권임이 확인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는 내용 등의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협회) 채권 계약 시, 한 건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턴 키 방식으로 묶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위원) 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기간을 중단 또는 정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처벌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운영상 비용의 문제인지?

○ (○○○협회) 운영상 비용의 문제라고 판단함.

(2) 부처 의견청취

○ (법무부) 금융기관 등이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추심업체에 헐값에 매각하고, 업자들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 금지 및 소각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본 개정안은 이에 따라 채무자가 소멸시효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소멸시효 기간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규정함.

○ (○○○위원) 채권의 묶음 판매 등으로 양수인이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 이에 따라 본 규제 도입으로 양수인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처의 입장은?

○ (법무부) 양수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함. 다만, 양수인이 헐값에 채권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등 적절치 못한 채권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러한 상황에서 양수인에 대한 보호에 비해 채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함

○ (○○○위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권에 대해 변제를 회피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법무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지 않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멸시효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20%에 불과함. 따라서 제도에 대한 정보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규제의 입법 취지임.

○ (○○○위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가 아니라 경과된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를 규정하고 예외조항을 둔 까닭은?

○ (법무부) 소멸시효 완성을 직접 규제하지 않은 이유는 완성 사실이 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하되, 완성되지 않았음을 소명한 경우 예외를 두는 형태로 규제를 마련함.

○ (○○○위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기간이 경과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귀찮은 절차가 추가되어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법무부) 물론 그런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함.

○ (○○○위원) 20대 국회에서 양도·양수를 금지한 것과 달리 본 개정안은 양수 자체는 허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변제가 금지되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임.

○ (법무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것이 더 확실한 규제 방안이 될 것이지만,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양수는 허용하되, 변제요구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음.

○ (○○○위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 (법무부) 양수인에 대한 보호에 비해 채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며, 이런 측면에서 규제 적용 범위를 채권 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음.

○ (○○○위원) 채권의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함.

○ (○○○위원) 채무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얻을 수 없게 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또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음. 따라서 규제 적용 대상 범위를 채권 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하고, 대상 채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권으로 상한을 설정하여, 소액채무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임. 또한, 본 규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덜어주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우려를 덜 수 있다고 판단됨.

○ (○○○위원) 부칙 제4조는 제8조의5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이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양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히 편법적인 채권 추심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 (법무부)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적용을 소급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름.

(4) 위원회 논의

○ (○○○위원) 이미 금감원 가이드라인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으로 이를 다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 (○○○위원)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경우 행정지도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다는 실효성이 있음.

○ (○○○위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정보 불균형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 (○○○위원) 규제가 만들어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해조정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측됨.

□ 심의 결과

○ **추심자**와 **채무자**간의 **정보불균형 해소** 및 **취약계층**인 **채무자 보호** 필요성 인정하여 **원안동의**함.

5.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정위, 2020-663)

□ 개 요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근거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제 사무명	1.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2.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위원회 결정 내용	1.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 원안동의 하도급대금 신청사유 확대 : 개선권고 2.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치 : 원안동의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반대 의견〉

○ (A단체/서면의견) 현재 대금조정 협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중으로, 금번 개정안에서 대금조정권자에 중기중앙회를 포함시키고 대금조정 신청사유에 약정CR까지 확대하면 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기업경영 애로가 심화되고, 특히 '예상치 않은 사정'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대금조정의 신청사유를 과도하게 인정하면 계약의 안정성을 침해함

○ (B단체) 하도급법은 계약 당사자 간 동등한 조건으로 상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법률인데, 이번 개정안은 약정계약이 단가 후려치기라는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악용 우려가 있고, 특히 '물량변경 등 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생산비용·마진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 위험영역까지 원사업자에게 전가할 소지가 다분함. 기존 하도급법으로도 충분히 대금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이 필요하다면 대금조정 신청사유를 '경기급락·금융위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OOO 위원) 대금조정 협의 신청은 원사업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사업자가 신청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원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지?

○ (B단체) 자동차산업은 부품 하나만 공급이 안 되어도 생산이 멈추게 되어 수백억 손실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부품업체의 대금조정 신청 자체가 완성차 업계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음

○ (OOO 위원) 대금조정 신청으로 인해 실제로 부품이 납품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그 사유가 단가 문제인지?

○ (B단체) 금년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 3차 업체가 2차 업체에 납품하지 못해 완성차업체가 자금 지원하여 3차 업체를 인수한 경우가 있고, 대부분 단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OOO 위원) 1차에서 2차, 3차 업체로 하도급될 경우 대금조정 신청제도를 통해 적정원가를 받을 수 있다면 완성차업체도 조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도움이 되지 않는지?

○ (B단체) 완성차업체에서도 글로벌 경쟁을 위해 원가 조정이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음

○ (OOO 위원) 약정CR은 계약당사자 간 연간 공급물량을 예측하여 계약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측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 제한적으로 대금조정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 (B단체) 대금조정 협의제도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경우는 단가조정을 할 수 있으나, 개정 법률안의 '계약 당시는 예상할 수 없던 사유'로 표현되어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봄

○ (OOO 위원) 하도급 대금조정제도는 계약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상생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제도로서,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화하기에 곤란하지 않은지?

○ (B단체) 법은 서로 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포괄적 규정은 최소화하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처 의견 청취

○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당·정·청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하도급 대금조정 협의권을 현행 중기조합 이외에 중기중앙회까지 확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원가분석·법률지원 등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OOO 위원)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제도가 앞으로 확대 도입될 경우 정책홍보 계획은 있는지? 하도급 대금조정 관련하여 해외의 국제기준 등 조사된 것이 있는지?

○ (공정위) 구체적 홍보계획은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의 대금조정 어려움이 파악되어 업종별 사업자단체와 함께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며, 외국의 경우 대금조정 은 민사영역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 (OOO 위원) 대금조정 신청 사유로 '물량 변동 등 예상할 수 없던 사유'라는 표현이 불명확한데,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있는지?

○ (공정위) 약정CR 개정안은 계약의 당사자 간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필요하다면 개정안 문구를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음

○ (OOO 위원) 추상적 수준의 법률이 만들어지면 논쟁의 소지가 있어, 시행령 등에서 혼동을 줄이는 세부적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지?

○ (공정위) 대금조정 신청을 원사업자가 수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협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약정CR 제도 마련 시 규정의 구체화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상적인 신청요건의 구체화에 대해 수용할 의향이 있으며 검토하겠음

○ (OOO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저조한 이유는?

○ (공정위) 중기조합이 전국에 943개가 활동 중이나, 상근직원이 평균 3.2명이며 13.6%는 상근직원이 없어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조정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하며 전문성이 낮고 의지도 없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기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 상생협력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OOO 위원) 대금조정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조정신청도 저조한 상황에서 중기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 없이 중기중앙회로 조정협의 신청 권한을 미루는 것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 (공정위)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하도급업체의 30% 정도가 대금조정 신청제도를 활용하되 수급사업자가 직접 대금조정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협상력이 부족할 경우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신청권자를 중기중앙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봄

(3) 위원회 논의

○ (OOO 위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권자에 중기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은 상생협력법과의 보완적 관계를 고려할 때 타당함

○ (OOO 위원)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조합의 홍보 부족 등 운영상 문제가 있지만, 대금조정 신청권자로 현행 조합 이외에 중기중앙회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함

○ (OOO 위원) 약정CR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이해관계자 의견이 많으므로 좀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심의 결과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권자와 보복조치 금지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에 **원안 동의**

○ 대금조정 협의 신청사유에 약정CR 계약을 염두에 둔 제3호 추가는 동의하되, '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사유'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